

# 무재해운동 사업장 자율 활동 전환 및 기록인증 폐지 안내

무재해운동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활동으로 아래와 같이 제도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.

## 1. 무재해운동 운영방식 변경('19.1.1. 시행)

- 무재해운동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무재해 운동 경영방침과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자율적 추진
- 무재해운동 목표설정은 「사업장 무재해운동 운영 규칙 별표2」에 의거 업종별 규모별 목표일수(시간수)를 설정하여 추진하되,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
- 공단은 희망 사업장에 대한 무재해운동 추진기법, 무재해용품(실내기, 실외기 등) 지속 보급

## 2. 무재해 목표달성 기록인증 업무 폐지('19.1.1. 폐지)

'19.1.1부터 **공단에서 목표달성 인증서 및 유공자 표창** 등의 서비스를 **제공하지 않음**

- 산재은폐 처벌 강화('17.7월)에 따라 은폐 유인의 소지가 있는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발급 등의 혜택을 폐지
- 기존 참여 사업장에 대한 **안내 및 혼돈방지를 위해 '18.12.31까지 인증신청이 접수된 사업장에 한하여 무재해 목표달성 기록인증 실시**

그동안 무재해운동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, 향후 무재해운동은 사업장 자율 안전문화 활동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